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. 10. 17 선고 2019가단704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 2019. 9. 26.

판결 선고 2019. 10. 1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남도 사천시 D 대 56m²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03. 12. 31. 접수 제2988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)

판사강현구

별지